



MATERION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Platinum Product
기타 식별 수단	
SDS 번호	G18
CAS 번호	7440-06-4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과학적 연구 및 개발 기타 : 의료 및 방어 장비 제조 컴퓨터의 제조, 전자 및 광학 제품, 전기 장비
사용상의 제한	소비자가 사용 개인 세대 (= 일반 = 소비자)
다. 공급자정보	
회사명	Materion Advanced Materials Germany GmbH
주소	Borsigstrasse 10 Alzenau 63755 독일
이메일	Materion.Germany@materion.com
담당자	Hermann Schmiing
긴급전화번호	49.60.23.91.82.0
수입자	
회사명	See above.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	G18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2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계 자극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위험

o 유해·위험 문구

고체 형태로 판매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쇄, 용융, 절단 또는 기타 분진이나 흙의 방출을 유발하는 공정이 포함 된 경우 유해한 수준의 공기 중 미립자가 생성 될 수 있습니다.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킵니다.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킵니다.

H334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십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십시오.
 P284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대응

취급 후에는 손을 씻을 것.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04 + P340 흡입한 경우: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편하게 할 것.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32 + 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42 + P311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저장

P403 + 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알려지지 않음.

보충정보 자세한 내용은 +1.216.383.4019에서 제품 관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Platinum Product		7440-06-4	KE-28808	100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작업복을 벗을 것.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십시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산소를 공급하거나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피해자가 물질을 흡입한 경우에는 구강 대 구강법을 사용하지 말 것. 단방향 밸브나 다른 호흡 의료 장치가 달린 포켓 마스크를 사용하여 인공 호흡을 시킬 것. If experiencing respiratory symptoms: Call a poison center or doctor/physician.
 라.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급성 및 지연된 심한 눈 자극. 증상으로 통렬감, 눈물, 충혈, 팽윤 및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음.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호흡 곤란. 피부 자극성. 충혈 및 통증을 일으킬 수 있음. 알려지지 않음.
 일반적인 조치사항 의사에게 사용된 물질에 대해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분말. 마른 모래. 주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부적절한 소화제 알려지지 않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이 제품은 불연성 물질임.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착용할 보호구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예방조치 개봉하지 않은 용기를 식히기 위해서 물 분무를 사용할 것.
 일반 화재 위험성 특정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명시되지 않음.
 특정 방법 표준 소방 절차를 준수하고 기타 관련된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 소지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장비 및 보호복을 착용할 것.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말 것. 적절하게 환기가 되도록 할 것. 누출정도가 심각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8항을 참조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도, 수로 또는 지하로 방출시키지 말 것. 누출물을 모으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제품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수표면에서 확산됨.

대량 누출: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가능한 경우 누출된 물질 주위로 도랑을 팅 것. 질석, 마른 모래나 흙에 흡수시켜서 용기에 담을 것. 제품을 수거 후 누출 지역을 물로 세척할 것.

소량 누출: 흡착재질(예. 천, 플리스(fleece))로 닦아낼 것. 잔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세척할 것.

절대로 옆질러 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13항을 참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눈, 피부 및 의복과 접촉을 피할 것.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단단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양립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 (본 MSDS의 10항을 참조).

8. 누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물질

종류

값

Platinum Product (CAS 7440-06-4)

TWA

1 mg/m3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물질

종류

값

Platinum Product (CAS 7440-06-4)

TWA

1 mg/m3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에 대해 알려진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없음.

노출 지침

이 물질은 지정된 노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양호한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환기 속도는 작업장 여건에 맞아야 함. 적용이 가능하면 공정기밀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 공기 중 수준이 권고 노출한계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킬 것.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기 중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이 되도록 유지시킬 것. 일반적으로 충분한 일반환기. 세안장치 및 긴급샤워시설을 제공할 것.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 보호

환기에 문제가 있으면 호흡기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o 눈 보호

측면 보호면을 갖춘 보안경(또는 고글)을 착용할 것.

o 손 보호

필요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취급 중 금속에 베이고 또 피부 찰과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o 신체 보호

필요한 내화학성 피복을 착용할 것.

위생대책

물질 취급 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씻는 등 항상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작업복과 보호용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리적 상태

고체.

형태

고체.

색

회색 .

나. 냄새

없음.

다. 냄새 역치	해당없음.
라. pH	해당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녹는점	1768.4 °C (3215.12 °F)
어는점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825 °C (6917 °F)
사. 인화점	해당없음.
아. 증발 속도	해당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알려지지 않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해당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해당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해당없음.
폭발 한계 - 상한 (%)	해당없음.
카. 증기압	해당없음.
타. 용해도	
용해도(물)	불용성
파. 증기밀도	해당없음.
하. 비중	해당없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해당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해당없음.
더. 분해 온도	해당없음.
러. 점도	해당없음.
머. 분자량	195.08 g/mol
기타 정보	
밀도	21.45 g/cm3 추정됨
폭발 특성	폭발하지 않음.
분자식	Pt
산화성	산화성이 아님.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제품은 통상의 사용, 저장 및 운송조건에서는 안정하고 비반응성임.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화학적 안정성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물질은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험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열, 고온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기타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피해야 할 물질과의 접촉.
다. 피해야 할 물질	산. 알루미늄. 염소. 인.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알려진 유해한 분해산물이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o 호흡기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오래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품의 형태로 인해 관련성 적음.
o 피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제품의 형태로 인해 관련성 적음.
o 눈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제품의 형태로 인해 관련성 적음.
o 경구	섭취 위험이 낮다고 봄.
나. 건강 유해성 정보	
o 급성 독성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알려지지 않음.
o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제품의 형태로 볼때 관련이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제품의 형태로 인해 관련성 적음.
○ 호흡기 과민성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호흡기 감작제가 아님.
○ 피부 과민성	피부에 과민성 물질이 아님.
○ 발암성	분류되지 않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되지 않음.
○ 생식 독성	분류되지 않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분류되지 않음.
○ 흡인 유해성	흡인 유해성이 아님.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수생생물에 유해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본 제품은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그러나 이는 다량 또는 잦은 누출로 인해 환경에 유해성을 갖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이 제품의 분해성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없음.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제품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수표면에서 확산됨. 알려지지 않음.
마. 기타 유해 영향	본 성분으로부터 부정적인 환경 영향 (예: 오존층 감소,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호르몬 붕괴, 지구 온난화 가능성) 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제조사/공급자가 제공한 재생용·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용자, 생산자, 폐기물 처리업체가 협의하여 폐기물 코드를 부여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A. UN number	Not applicable.
B. UN proper shipping name	Not applicable.
C. Transport hazard class(es)	
Class	Not applicable.
Subsidiary risk	-
D. Packing group	Not applicable.
E. Environmental hazards	No.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Not applicable.
IMDG	
A. UN number	Not applicable.
B. UN proper shipping name	Not applicable.
C. Transport hazard class(es)	
Class	Not applicable.
Subsidiary risk	-
D. Packing group	Not applicable.
E. Environmental hazards	
Marine pollutant	No.
EmS	Not applicable.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Not applicable.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Platinum Product (CAS 7440-06-4)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Platinum Product (CAS 7440-06-4)

노출기준설정물질

Platinum Product (CAS 7440-06-4)

나. 화학물질관리법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관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PEC) (환경부 고시 제2015-92)

등재되지 않음.

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질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관한 사전통보승인절차 (PIC)에 관한 규정, MoE 번호 2014-252, 2014년 12월 31일;
살충제에 관한 규정, RDA 번호 2014-26), 개정된 바에 따라**

등재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추가 정보

이 물질의 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한국

목록명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ECL)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참고문헌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 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한국.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3호, 별표 2 및 3, 2005년 12월 28일)

한국. OELs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노동부 고시 제1986-45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까지의 개정본, 2013년 8월 14일)

한국. 금지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및 5)

한국. 제한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3)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2015년 1월 27일, 환경부 고시 제2016-138호까지의 개정본, 2016년 7월 13일

한국. 유독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0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1)

한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환경부 고시 제2002-166호, 2002년 11월 8일)

이 문서는 기술적으로 신뢰성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출처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보는 정확한 것으로 확신된다. 마테리온(Materion)은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보증을 전혀 하지 않는다.

마테리온(Materion)은 이 정보와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사용조건이 자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조건을 예상할 수 없다.

사용자는 특정한 용도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가용한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모든 연방, 주, 지역 및 지방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